

1. 들어가면서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1998년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미국기업 이외에도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에 대하여 FCPA 위반행위 수사 및 제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2016년 한 해 동안 FCPA 집행과 관련하여 판결 또는 Settlement를 통해서 부과 또는 합의한 금액의 합계는 약 61억불로 정점에 이르렀고¹⁾, 그 이후 FCPA 집행과 관련된 제재금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이 약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FCPA의 집행을 중단하고,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FCPA의 집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아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해가된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FCPA 수사 및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²⁾.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위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6월 9일 FCPA 수사 및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집중하여 FCPA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신규 FCPA 수사 또는 집행의 개시는 DOJ 형사국 차관보(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Criminal Division) 또는 그 보다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가 FCPA 수사 및 집행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방기소원칙(the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및 관련 정책과 인자(relevant policies and factors) 이외에도 카르텔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의 전면적 제거,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호, 미국 국가안보의 증진, 중대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s)에 대한 우선수사라는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DOJ는 2026년 3월 10일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초로 DOJ 부처 전반에 적용되는 기업 집행 정책(Corporate

1) Stanford Law Schoo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Clearinghouse, “2024 FCPA Year in review” page 5 (<https://fcpa.stanford.edu/fcpac-reports/2024-fcpa-year-in-review.pdf>)

2) 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 The White Hous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CEP”)을 발표하였습니다³⁾. CEP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2025년 5월 개정 발표된 기업집행정책⁴⁾과 유사하지만 기존 DOJ 형사국 (Criminal Division)의 법 집행 뿐만 아니라, 반독점 사안을 제외한 DOJ의 모든 기업 형사 사건에 적용되며, 기존의 DOJ 각 부서 또는 연방검찰청별 기업 집행 정책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FCPA 관련 최근 행정명령 및 CEP에 따른 집행정책의 변경은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FCPA의 직접적 적용대상인 ADR을 발행하거나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한국회사에 대하여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FCPA의 개요와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집행 가이드라인, CEP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FCPA의 개요

FCPA의 관련 규정은 회계 및 내부통제 규정(Accounting and Internal Control Provisions)과 반부패 규정(Anti-Bribery Provisions)으로 구분됩니다.

(1) 회계 및 내부통제 규정(Accounting and Internal Control Provisions)

회계 및 내부통제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Issuer)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가. Accounting 규정

발행인은 가능한 자세하게 거래와 자산의 처분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장부, 기록 및 계정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⁵⁾.

나. Internal Control 규정

나아가,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집행이 담보될 수 있을 정도의 내부적인 회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Office of Public Affairs | Department of Justice Releases First-Ever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for All Criminal Case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4) Criminal Division Corporat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5) 15 U.S.C. § 78m(b)(2)(A) Every issuer which has a class of securities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and every issuer which is required to file reports pursuant to section 78o(d) of this title shall make and keep books, records, and accounts, which, in reasonable detail, accurately and fairly reflect the transactions and dispositions of the assets of the issuer;

- (i) 거래는 경영진의 일반 또는 특별 수권(受權)하에서만 이루어질 것;
 - (ii) 거래가 일반적인 회계원칙 혹은 기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재무제표의 작성을 할 수 있고, 자산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만큼 기록되어야 함;
 - (iii) 자산에 대한 접근은 경영진의 일반 또는 특별 수권(受權)하에서만 이루어질 것; 그리고
 - (iv) 기록된 자산과 현존자산을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기록된 자산과 실제자산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⁶⁾
- 만약 한국회사라도 ADR의 발행이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통하여 FCPA상 발행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 및 내부통제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반부패 규정(Anti-Bribery Provisions)

가. 의의

FCPA의 반부패 규정은, (i) 발행인(Issuer), 미국 거주자(Domestic concern) 또는 발행인, 미국 거주자 이외의 비거주 외국인(Foreign non-resident)이(행위주체), (ii) 외국 공무원, 외국 정당 또는 그 관리, 외국 공직 후보자 또는 금전이나 가치 있는 여하한 것의 전부나 일부가 이들에게 제의 또는 공여 등이 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행위객체), (iii)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연결을 위하여,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작위·부작위를 할 것을 권유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외국 정부나 대행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유하려는 목적으로(목적), (iv) 금전 또는 가치 있는 일체의 것을(목적물), (v) 부정하게 제의, 공여, 공여의 약속 또는 공여 권한을 부여(“제의 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주체

행위주체 가운데 발행인(Issuer)이란, “미국 증권거래법⁷⁾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동법 제15(d)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발행인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또는 주주를

6) 15 U.S.C. § 78m(b)(2)(B).

Every issuer which has a class of securities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and every issuer which is required to file reports pursuant to section 78o(d) of this title shall

(B) devise and maintain a system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sufficient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s that

- (i) transactions ar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management's general or specific authorization;
- (ii) transactions are recorded as necessary (I) to permit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r any other criteria applicable to such statements, and (II) to maintain accountability for assets;
- (iii) access to assets is permitted only in accordance with management's general or specific authorization; and
- (iv) the recorded accountability for assets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assets at reasonable intervals and appropriate action is taken with respect to any differences.

7)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

의미합니다⁸⁾. 그리고, 미국 거주자(Domestic concern)란,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과, 발행인을 제외한 주된 사업 장소가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조합, 협회, 주식회사, 경영위탁, 비법인 기관 또는 개인기업과 그 임원, 이사, 직원, 에이전트 또는 주주를 의미합니다⁹⁾. 위와 같은 발행인 및 미국 거주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한 여하한 주제간(州際間) 통상(interstates of commerce)의 방법으로 위의 반부패 행위를 하였을 경우 FCPA 관할권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반부패와 관련된 행위가 주제간(州際間) 통상(interstates of commerce or international commerce)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FCPA의 적용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미국연방헌법이 순수한 한 주(州)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Interstates of commerce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관할(연방법인 FCPA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간 통상의 방법이란, 미국내의 여러 주 사이에, 또는 외국과 미국내 주 사이에서의 전화 또는 기타 주제간 통신수단, 또는 주제간 중계수단을 포함하는 무역, 통상, 수송 또는 통신을 의미합니다¹⁰⁾. 나아가, 미국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국적관할권을 인정하는 대체관할권 조항에 의하여 주제간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미국 외에서 반부패 행위를 한 경우에도 FCP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¹¹⁾.

한편, 발행인 또는 미국 거주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는 본래 FCPA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1998년 FCPA의 개정으로 FCPA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는 미국 영토 내 있는 동안(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반부패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FCP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주제간 통상의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와 관련한 규정은 문언적으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반부패 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FCPA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미국에

8) Any issuer which has a class of securities registered pursuant to section 78l of this title or which is required to file reports under section 78o(d) of this title, or for any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agent of such issuer or any stockholder thereof acting on behalf of such issuer (15 U.S.C. § 78dd-1(a))

9) (1) The term "domestic concern" means—
 (A) any individual who is a citizen, national,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 any corporation, partnership, association, joint-stock company, business trust, unincorporated organization, or sole proprietorship which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r which is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State of the United States or a territory, possession, or commonwealth of the United States. (15 U.S.C. § 78dd-2(h)(1))
 any domestic concern, other than an issuer which is subject to section 78dd-1 of this title, or for any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agent of such domestic concern or any stockholder thereof acting on behalf of such domestic concern (15 U.S.C. § 78dd-2(a))

10) The term "interstate commerce" means trade, commerce,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 among the several States, or between any foreign country and any State or between any State and any place or ship outside thereof, and such term includes the intrastate use of—
 (A) a telephone or other interstate means of communication, or
 (B) any other interstate instrumentality.
 (15 U.S.C. § 78dd-2(h)(5); 15 U.S.C. § 78dd-3(f)(5))

11) 15 U.S.C. § 78dd-1(g)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반부패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¹²⁾. 그러나, 미국 DOJ는 위와 같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동안”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자신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반부패와 관련된 행위가 발생토록 야기하는 경우”¹³⁾라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실제로 그와 같은 해석을 외국인과 외국회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행위의 객체

FCPA는 행위의 객체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행위의 대상이 되는 외국 공무원에는 (1) 외국 정부, 행정부서(department), 대행기관(Agency), 공적 업무 수행기관(instrumentality) 또는 공적 국제기구의 임직원, (2) 위와 같은 기관 또는 기구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자, (3) 외국의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또는 (4) 정치직에 대한 입후보자가 포함됩니다¹⁴⁾. 한편, 공적 업무 수행기관(instrumentality)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 또는 기업(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enterprise)은 위의 공적 업무 수행기관(instrumentality)에 포함됩니다¹⁵⁾. 나아가, 위와 같은 외국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3자(예를 들어, agent)에게 제공하는 것도 FCPA 위반에 해당합니다¹⁶⁾. 여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의미는 실제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믿고 있는 경우에도 안다는 의미에 포함됩니다¹⁷⁾.

12)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ther than an issuer that is subject to section 30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or a domestic concern, as defined in section 104 of this Act), or for any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agent of such person or any stockholder thereof acting on behalf of such person,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corruptly to make use of the mails or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to do any other act in furtherance of an offer, payment, promise to pay, or authorization of the payment of any money, or offer, gift, promise to give, or authorization of the giving of anything of value to—(15 U.S.C. § 78dd-3(a))

13) A foreign company or person is now subject to the FCPA if it causes, directly or through agents,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corrupt payment to take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DOJ, Lay-Person's Guide to the FCPA)

14) 15 U.S.C. § 78dd-1(a)(2), (f)(1)(A).

15) “정부의 지배 또는 통치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체는 instrumentality로 볼 수 있다.” (United States v. Joel Esquenazi and Carlos Rodriguez, Case No. 11-15331) (11th Cir. May 16, 2014); “정부소유의 회사는 FCPA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업무 수행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 (United States v. Noriega, 2:10-cr-01031 (C.D. Cal.)); (United States v. Syncor Taiwan, Inc., CR 02-1244(C.D. Cal. 2002)); 한편 정부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소유의 공사 또는 기업으로 인정되며, 그 이하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권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instrumentality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6) any person, while knowing that all or a portion of such money or thing of value will be offered, given, or promis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y foreign official, to any foreign political party or official thereof, or to any candidate for foreign political office(15 U.S.C. § 78dd-1(a)(3), 15 U.S.C. § 78dd-2(a)(3), 15 U.S.C. § 78dd-3(a)(3))

17) 15 U.S.C. § 78dd-1(f)(2), 15 U.S.C. § 78dd-2(h)(3), 15 U.S.C. § 78dd-3(f)(3)

따라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외국 공무원 등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금품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는 FCPA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¹⁸⁾.

라. 행위의 대상, 목적물 및 “부정하게” 요건

FCPA의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위의 목적은 (1) 행위자가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제3자에게 연결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¹⁹⁾ (“Business Purpose Test”), (2) 외국의 공무원 등의 결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국 공무원 등이 자신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작위·부작위를 할 것을 유도하거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외국정부나 대행기관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²⁰⁾. Business Purpose Test와 관련하여 DOJ는 이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단순히 계약체결 또는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며²¹⁾, 비용의 절감, 관세 및 세금의 감면, 세관통관 절차의 신속, 수입통관규제의 우회, 감사원의 감사의 완화, 경쟁자의 인허가 절차의 방해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²²⁾. 한편, 외국 공무원의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FCPA는 1998년 개정으로 OECD 모델법상의 “부정한 이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반드시 외국 공무원 등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넓혀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은 금전 또는 가치 있는 일체의 것(money or anything of value)을 의미합니다. FCPA에서는 가치의 최소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론상으로는 1달러만 되어도 대상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SEC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액으로 43,000달러를 터키의 공무원에게 제공한 사건에서 FCPA의 위반으로

18) United States v. Baker Hughes Servs. Int'l Inc., Criminal No. H-07-129 등의 사실인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Agent, Consultants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중개인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요소(red-flags)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없이 만연히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개자가 뇌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in order to assist such issuer in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for or with, or directing business to, any person (15 U.S.C. § 78dd-1(a)(1)(2)(3); 15 U.S.C. § 78dd-2(a)(1)(2)(3); 15 U.S.C. § 78dd-3(a)(1)(2)(3))

20) for purposes of—

(A) (i) influencing any act or decision of such party, official, or candidate in its or his official capacity, (ii) inducing such party, official, or candidate to do or omit to do an act in violation of the lawful duty of such party, official, or candidate, or (iii)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B) inducing such party, official, or candidate to use its or his influence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thereof to affect or influence any act or decision of such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15 U.S.C. § 78dd-1(a)(2)(3); 15 U.S.C. § 78dd-2(a)(2)(3); 15 U.S.C. § 78dd-3(a)(2)(3))

21) The Department of Justice interprets "obtaining or retaining business" broadly, such that the term encompasses more than the mere award or renewal of a contract. (DOJ, Lay-Person's Guide to the FCPA)

22) U.S. v. Kay, et al. (SCOTUS, Docket No. 07-1281); U.S. v. Kay, et al. (5th Circuit, Docket Nos. 05-20604, 05-20606); U.S. v. Kay, et al. (S.D. Tx., Docket No. 01-CR-914; United States v. Panalpina World Transport (Holding) Ltd. Court Docket Number: 10-CR-769 filed on November 4, 2010, in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United States v. Manuel Salvoch Court Docket Number: 10-CR-20893 filed on December 17, 2010, in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United States v. Tyson Foods, Inc. Court Docket Number: 11-CR-037-RWR filed on February 10, 2011, in the District of Columbia; United States v. Magyar Telekom, Plc. Court Docket Number: 11-CR-597 filed on December 29, 2011, in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30만불을 지급하는 내용의 Settlement를 한 사례가 있어²³⁾, 비교적 경미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FCPA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치 있는 일체의 것은 그 문언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나, 여기에 기부금, 선물, 판촉물, 식사대접, 숙박, 접대, 교통비, 의료비의 대지급, 업무와 무관한 관광, 매춘의 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²⁴⁾.

마지막으로 FCPA는 “부정하게”(corruptly)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²⁵⁾. “부정하게”라는 요건은 계약, 구두 약속, 의견의 교환 등을 통하여 해외 공무원 등이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의 얼마나 가치 또는 사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공과정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되었는지, 제공자가 해당 해외 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할 현안을 가지고 있는지,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경우 에이전트의 당해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에이전트가 제공한 업무와 대가가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그리고,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접 금품을 교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외국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 또는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라는 요건이 성립합니다²⁶⁾.

마. 외국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관할 적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CPA의 반부패규정은 발행인이나 미국 거주자 이외의 자,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부패와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도록 야기하는 경우 FCPA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일응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 영토 내에 실제 체류하는 동안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문언상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미국영토내에서 미팅을 가지면서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기획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²⁷⁾. 그런데, DOJ 및 SEC는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공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전화, 이메일, 문자 또는 팩스를 송신, 또는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신하는 행위, 미국 correspondent

2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Delta & Pine Land Company and Turk Deltapine, Inc., Case No. 1:07-CV-01352 (RWR) (U.S.D.C., D.D.C) (filed July 25, 2007)

24)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Schering-Plough Corporatio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vil Action No. 1:04CV00945 (PLF); SEC v. Lucent Technologies Inc., Civ. Act. No. 1:07-cv-02301 (D.D.C.) (RBW) (filed December 21, 2007)

25) corruptly in furtherance of an offer, payment, promise to pay, or authorization of the payment of any money, or offer, gift, promise to give, or authorization of the giving of anything of value (15 U.S.C. § 78dd-1(a); 15 U.S.C. § 78dd-2(a); 15 U.S.C. § 78dd-3(a))

26) SEC v. MONSANTO COMPANY, Case No. 1:05CV00014 (U.S.D.C., D.D.C) (filed January 6, 2005)

27) DOJ and SEC,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econd Edition, July 2020, page 11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fraud/file/1292051/dl?inline>)

bank account를 통한 국제 송금²⁸⁾ 또는 미국 서버를 통한 이메일 교환²⁹⁾으로도 관할권이 성립된다고 하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자금이 달러화로 국제 송금될 경우, 예를 들어 현재의 금융결제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미국 내 correspondent bank account를 거쳐 송금절차가 진행되는데, DOJ는 이러한 correspondent bank account를 거치는 것도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를 관할권 인정의 근거로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DOJ의 이러한 공격적인 관할권 인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이 행해질 경우, correspondent bank account만으로는 관할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³⁰⁾.

실제로, correspondent bank account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로의 우편물 송부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U.S. v. Patel³¹⁾ 사건에서 DOJ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뇌물 관련 계약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송부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영국 방산업체 중역인 Patel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자, 미국 법원은 FCP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뇌물공여 행위가 실제로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단지 미국으로 뇌물관련 계약서가 송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FCPA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미국 법원이 미국 영토 내로의 우편물 송부에 대해서 FCPA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고려하면, 오로지 Correspondent Account Jurisdiction만을 이유로 FCPA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법원이 이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다른 요소와 함께 결합하여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DOJ 및 SEC가 FCPA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대부분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실질적으로는 DOJ 및 SEC의 폭넓은 관할권 주장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J 및 SEC는 자신이 관할권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FCPA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인 발행인과 미국 거주자와의 공모(Conspiracy) 또는 방조(Aiding and Abetting) 이론을 적용하면서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³²⁾.

(3) 위반에 대한 제재

FCPA 위반의 경우 개인 및 회사에 대한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28) United States v. JGC Corporation Docket No: 11–CR–260 filed on April 6, 2011, in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29) United States v. Magyar Telekom, Plc. Court Docket Number: 11–CR–597 filed on December 29, 2011, in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30) Sean Hecker, Margot Laporte, “Should FCPA “Territorial” Jurisdiction Reach Extraterritorial Proportions?” International Law News, Vol. 42, No. 1.

31) U.S. v. Patel, No. 1:09–cr–00335, Trial Tr. 5:11–14, 7:17–8:2 (D.D.C. June 6, 2011).

32) United States v. JGC Corporation Docket No: 11–CR–260 filed on April 6, 2011, in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가.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반부패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임직원, 이사, 에이전트, 주주 등)의 경우에는 위반 건당 5년이하의 징역과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³³⁾, 회사의 경우에는 위반 건수당 2백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³⁴⁾. 한편, 회계 및 내부통제규정 위반의 경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위반자가 개인(임직원, 이사, 에이전트, 주주 등)인 경우에는 위반 건당 20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인 경우에는 위반 건당 2,50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³⁵⁾. 또한, Alternative Fines Act에 의거,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러한 이익 또는 손해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벌금액 중 더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³⁶⁾. 나아가, FCPA 위반으로 개인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³⁷⁾.

나.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y)

먼저, 반부패 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인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26,262달러 이하의 민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⁸⁾. 회계 및 내부통제규정 위반시 SEC는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법정한도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제재를 구할 수 있으며³⁹⁾, 법정한도금액은 개인의 경우에는 11,823달러에서 236,451달러의 범위에서, 회사인 경우에는 118,225달러에서 1,182,251달러의 범위 내에서 민사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⁴⁰⁾.

33) 15 U.S.C. §§ 78dd-2(g)(2)(A), 78dd-3(e)(2)(A), 78ff(c)(2)(A); 18 U.S.C. § 3571(b) (FCPA 법률 상 벌금은 10만달러 이하이나, 형사벌금 조항인 18 U.S.C. § 3571(b)상 더 높은 벌금인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4) 15 U.S.C. §§ 78dd-2(g)(1)(A), 78dd-3(e)(1)(A), 78ff(c)(1)(A)

35) 15 U.S.C. § 78ff(a)

36) 18 U.S.C. § 3571(d)

37) 15 U.S.C. § 78dd-2(g)(3); 15 U.S.C. § 78dd-3 (e)(3); 15 U.S.C. § 78ff(c)(3)
Whenever a fine is imposed under paragraph (2) upon any officer, director, employee, agent, or stockholder of a domestic concern, such fine may not be paid, directly or indirectly, by such domestic concern.

38) 15 U.S.C. §§ 78dd-2(g)(1)(B), 78dd-3(e)(1)(B), 78ff(c)(1)(B); 15 U.S.C. §§ 78dd-2(g)(2)(B), 78dd-3(e)(2)(B), 78ff(c)(2)(B); 17 C.F.R. § 201.1004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에 따라 2025년 상향된 금액인 26,262달러 이하의 민사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gov | Inflation Adjustments to the Civil Monetary Penalties Administer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s of January 15, 2025)

39) DOJ and SEC,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econd Edition, July 2020, page 71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fraud/file/1292051/dl?inline>)

40) 증권거래법 Section 21(B)(b), 15 U.S.C. § 78u(d)(3); 17 C.F.R. § 201.1004 (2025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에 따라 금액이 법정한도금액이 상향됨) SEC.gov | Inflation Adjustments to the Civil Monetary Penalties Administer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s of January 15, 2025)

다. 몰수(Forfeiture) 및 추징(Disgorgement)

위에서 살펴본 형사상 및 민사상 제재에 추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제재

위와 같은 제재 이외에도, 미국 거주자 또는 그 임직원, 이사, 대리인 또는 주주가 반부패 조항의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영구가처분 또는 임시가처분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Settlements에서 DOJ는 회사가 FCPA 준수를 위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예를 들어 FCPA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외부감사인 선임, 일정기간 동안의 보고의무), 이러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FCPA 조사 및 집행으로 인해 회사경영 및 주식가치 등에 악영향이 미칠 경우,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FCPA 조사 대처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소송에 대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⁴¹⁾.

그리고 2015년 미국 법무부 차관인 Sally Yates가 기업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서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이츠 메모⁴²⁾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기업범죄사건에서 기업이 credits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범죄에 대하여도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회사가 DOJ 및 SEC와의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도 관련된 개인은 별도로 피소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나아가, DOJ와 SEC는 민·형사상 제재와 별도로 FCPA를 위반한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정부부처와의 거래활동에서 자격박탈(debarment), 수출면허 취득 자격 박탈, 증권거래 중단 및 금지, 해외 민간투자공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참가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마. 집행유형 추세

DOJ 및 SEC의 집행유형 추세를 살펴보면, 위반사건의 해결방법으로 기소 이외에도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재판전 합의(pre-trial agreement) 또는 유사한 법적 수단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에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등이 있습니다.

유죄인정합의는 피고인은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을 하고 그 양형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으로서 그 유죄인정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기소유예합의는

41) 실제로 2013년도에만 Net 1 Technologies, Inc., Juniper Networks, Inc., Avon Products, Inc. 등이 FCPA 조사와 관련하여 주식가치가 급락하였고,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2) Memorandum entitled "Individual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Wrongdoing" September 9, 2015 [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15/09/10/individual_accountability_for_corporate_wrongdoing_dag_memo2.pdf](https://www.justice.gov/d9/pages/attachments/2015/09/10/individual_accountability_for_corporate_wrongdoing_dag_memo2.pdf)

DOJ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동시에 형사소추절차의 유예를 청구하는 합의로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을 포기하고, 정부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인정합의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합의에서 정한 사항이 완료되는 경우 DOJ는 기소절차를 취소합니다. 불기소합의는 DOJ는 기소를 할 권한을 보유하지만 그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기소유예합의와 다른 점입니다. 불기소합의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기소유예합의의 내용과 유사하며, 불기소합의 기간동안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DOJ는 기소를 하지 않게 됩니다⁴³⁾.

바. 처벌 사례

FCPA 위반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FCPA 위반 법인에 대한 벌금이나 유죄협상을 위한 합의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도 활발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2020년 10월,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뇌물을 제공하여 수익성 높은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총 16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었고, 영국,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들에게도 추가로 13억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독일회사인 Siemens AG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10년 이상 행해진 뇌물범죄를 조사하여 위 법인 자체에 대해 DOJ는 형사상 4억5,000만불, SEC는 민사상 3억5,000만불의 벌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Siemens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본국인 독일에서도 8억불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 외에 스위스, 이태리, 그리스, 중국 등 관련되는 모든 국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2014년에는 프랑스 에너지 회사인 Alstom이 동 회사의 회계 및 내부통제 규정 위반 및 그 스위스 자회사의 반부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역대 최대 DOJ 제재금인 형사상 7억7,229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수억 불의 벌금 또는 합의금이 결정된 사례는 많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집행사례로 2022년 한국의 K사는 2022년 2월 베트남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회계장부 및 기록 조항과 내부회계통제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SEC의 민사상 혐의를 종결하기 위해 미화 6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⁴⁴⁾.

그리고, S사는 2019년 11월에 브라질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한 계획과 관련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약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S사는 다른

43) DOJ and SEC,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econd Edition, July 2020, page 76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fraud/file/1292051/dl?inline>)

44) KT Corporation은 FCPA상의 Issuer에 해당하여 회계 및 내부통제규정이 적용됩니다. Steptoe Client Alert “The Top Ten Asia-Pacific FCPA Enforcement Actions of 2022”에서 인용함 https://www.steptoe.com/en/news-publications/the-top-ten-asia-pacific-fcpa-enforcement-actions-of-2022.html?utm_source=chatgpt.com

자들과 공모하여, 브라질 국영 석유 및 국가 통제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관계자들에게 뇌물이 지급될 것임을 알면서도, 브라질 중개인에게 약 2,000만 달러의 수수료(commission)를 부정하게 지급함으로써 FCPA를 위반하였고, S사는 미국 내에 위치한 지사를 통해 이러한 뇌물 공모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FCPA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합의의 일환으로, S사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진행 중인 모든 조사 및 기소에 계속 협력하고,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강화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이행 상황을 DOJ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⁵⁾.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후의 행정명령, 집행가이드라인, CEP

(1)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2월 10일자 행정명령⁴⁶⁾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중단하고,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재의 FCPA의 집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아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밝히면서 미국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FCPA 수사 및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동안 FCPA의 수사와 집행에 관련한 기존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검토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i) 개별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FCPA 수사 또는 집행의 개시를 중단한다.
- (ii) 기존의 모든 FCPA 수사 또는 집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FCPA 집행을 적절한 범위로 복원하고 대통령 외교정책 특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iii) 외교 수행 및 미국 국익 우선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제고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향상 및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을 발표한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개시되거나 계속된 FCPA 조사 및 집행 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

45) 미국 DOJ Press Release of November 22, 2019. Office of Public Affairs | Samsung Heavy Industries Company Ltd Agrees to Pay \$75 Million in Global Penalties to Resolve Foreign Bribery Cas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46) 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 The White House

또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미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지침 또는 정책이 발표된 후, 미국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과거 FCPA 조사 및 집행과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그러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2) DOJ의 FCPA 수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2025년 6월)⁴⁷⁾

DOJ는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2025년 6월 9일자로 FCPA 수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집행을 집중하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도록 FCPA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신규 FCPA 수사 또는 집행의 개시는 DOJ 형사국 차관보(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Criminal Division) 또는 그보다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는 FCPA 수사 및 집행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에 예시된 사항을 고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A) 행정명령상 고려사항

- 카르텔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의 전면적 제거⁴⁸⁾
-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호⁴⁹⁾
- 미국 국가안보의 증진⁵⁰⁾
- 중대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s)에 대한 우선수사⁵¹⁾

(B) 추가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의 고려요소는 예시적인 것으로, 모든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47) 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June 9, 2025) 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48) FCPA 수사 또는 집행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위법행위가 (1) 카르텔 또는 TCO의 범죄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2) 카르텔 또는 TCO를 위한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자금세탁업자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3) 카르텔 또는 TCO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영기업 임직원이나 기타 외국 공무원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2025 Guideline page 2)

49) 검사들은 해당 위법행위가 특정 미국 기업 또는 개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또는 특정 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고, 외국 공무원의 뇌물 요구라는 “수요 측” 부패를 처벌하는 해외갈취방지법(Foreign Extortion Prevention Act, 18 U.S.C. § 1352)에 따른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도, 특정 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 공무원의 뇌물 요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5 Guideline page 3).

50) FCPA 집행은 핵심 인프라(핵심광물, 항구 등) 또는 핵심 자산과 관련된 부패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025 Guideline page 3).

51) FCPA 수사 및 집행은 통상적인 사업 관행이나 소액·경미한 수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상 접대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는 대신, 상당한 금액의 뇌물 제공, 뇌물 지급을 은폐하기 위한 정교하게 계획된 시도, 뇌물지급을 위한 사기적 행위, 사법방해 시도 등 특정 개인과 연계된 강한 부패 의도가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25 Guideline page 4).

있어서는 연방기소원칙(the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관련 정책과 인자(relevant policies and factors)가 고려되어야 함.

(3) 2026년 DOJ의 CEP

2026년 3월에 발표된 DOJ의 CEP는 독점금지법을 제외한 DOJ가 관여하는 형사소추에 모두 적용됩니다. CEP는 범죄 행위를 조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고,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법의 효과적인 적시 집행을 촉진하며,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결함의 보완을 포함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용이하게 하고, DOJ 전체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DOJ의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EP에 의하면 DOJ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업을 기소하지 아니합니다(Part I).

1. 기업이 적절한 DOJ의 형사기관에 비위를 자발적으로 자체 신고했을 것.
2. 기업이 법무부의 수사에 완전히 협력했을 것.
3. 기업이 비위를 적시에 적절하게 시정했을 것.
4.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 기업 내 비위의 악질성이나 광범위성, 비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또는 기업의 재범 (구체적으로 최근 5 년 이내의 형사 판결 또는 해결, 혹은 현재 비위와 유사한 비위에 기반한 경우) 과 관련된 가중 상황이 없을 것.

기업이 전적으로 협력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했으나, 부록에 정의된 '자발적 자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2) 형사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가중 요소가 있어 Part I의 불기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DOJ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Part II).

1. 특별히 악질적이거나 복수의 가중 상황이 없는 한 불기소합의서(NPA) 를 체결
2. 합의 기간을 3 년 미만으로 함.
3. 독립적인 준법 감시(compliance monitor)를 요구하지 않음.
4. 미국연방양형지침 (U.S.S.G.) 벌금 범위의 하한선에서 최소 50% 에서 최대 75% 까지 감경.

DOJ는 2026년 3월 19일 발표를 통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인 Balt SAS를 대상으로 한 FCPA 위반혐의- Balt SAS가 프랑스 국영 공립병원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의사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에 대하여, CEP Part I에 의거하여 Balt SAS가 해당 부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완전히 협력하며, 시의적절하고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DOJ는 발트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DOJ 전체의 CEP가 적용된 첫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⁵²⁾.

4. 시사점

위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미국 DOJ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향후 FCPA 집행은 미국기업보호, 카르텔 및 TCO의 제거, 미국 국가안보 및 핵심인프라의 보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사업상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집행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위 가이드라인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된 집행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카르텔과 TCO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의 항만, 에너지, 핵심광물, 방위산업, 통신 등 전략 인프라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외 사업을 위하여 고액뇌물이나 뇌물지급을 은폐하기 위한 정교한 시도를 하는 경우, 미국 기업과 해외사업진행을 위한 참여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등), FCPA에 의한 수사 및 집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DOJ 전부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제외한 사건에서 CEP가 도입되면서, 기업이 형사사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인 위반사항 신고가 중요시되고, 개인책임에 대한 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기업으로서는 글로벌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제3자 에이전트,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실사, 해외 자회사 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FCPA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시에 자진신고 등에 대한 의사결정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 나가며

최근의 국제정세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와 자국보호주의의 강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의 입법동향 및 법 집행경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의 국가안보 강화, 자국민과 자국이익의 보호의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FCPA의 집행과 관련한 행정명령, DOJ의 집행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DOJ의 전부서에 대한 CEP 도입으로 미국 기업이 DOJ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수사협조에 대한 동기가 더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위와 같은 최근의 행정명령, 집행가이드라인, CEP에 대하여 숙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법체계, 위반행위발생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여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2) Office of Public Affairs | Justice Department Resolves Foreign Bribery Investigation with Balt SAS; Healthcare Executive and Sales Consultant Indicted in Alleged Years-Long Foreign Bribery Schem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